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연월일 : 2011년 5월 12일

발 의 자 : 노광기 의원 외 6인

1. 주 문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도내 거주 노인에게 일할 의욕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의안전문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사업발대식 및 박람회 개최지원
6.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우선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이 정한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 재정요인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 비용추계 내용 (단위:천원)

사 업 명	소 요 액	비 고
계	10,100,000	
공공분야일자리사업	8,721,000	1,530천원×5700명=8,721천원
인력파견형일자리사업	50,100	150천원×334명=50,100천원
소득창출형일자리사업	854,100	1,300천원×657명=854,100천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429,300	8,100천원×53명=429,300천원
홍보 및 기타	45,500	홍보 40,000천원, 기타 5,500원

2.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지방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충북도와 시군 분담비율 : 도비 10%, 시군비 90%